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오보’ NHN·CBSi 전여옥 의원에 배상”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승곤 판사는 8일 잘못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NHN(주)과 (주)CBS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 해당 기사가 주요 뉴스란에 게재돼 파급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오해

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등을 감안, 허위 기사로 피해를 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기사를 잘못 작성해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 작성 뒤 50여 분이 지나 바로 내용을 수정한 데다 이후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려 기사로 인해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500만 원으

로 제한했다.

전 의원은 대변인 시절인 작년 3월 (주)CBSi의 노컷뉴스팀 기자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에게 불만을 표시한 부분을 기사로 작성하면서 김 대변인 대신 전 의원이름으로 잘못 작성하고 이를 NHN(주)에 송고, 네이버에 그대로 게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두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6년 9월 8일

KBS 의료사고 보도 ‘초상권 침해’ 패소 소송 진행 중 사건 의사 얼굴·병원 그대로 방영 “위법성 조각 안 돼”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도리어 슈퍼 박테리아(MRSA)에 감염된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한 KBS 보도에 대해 “의사의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광태 판사는 KBS가 지난해 7월 7일 <뉴스타임>에 보도한 ‘속수무책 슈퍼 박테리아 비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모 의원 신경외과 원장 전 모 씨가 KBS와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전 씨 측의 반대에도 초상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30일 판결했다.

KBS는 지난해 보도를 하면서 전 씨의 상반신 사진 및 목소리, 병원의 외관과 간판을 내보냈다. KBS는 당시 오전 8시 방송과 함께 오후 8시 <뉴스타

임>에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전 씨의 얼굴도 내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KBS 취재 당시 이미 환자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며 잘못이 밝혀지면 배상할테니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요청했고, 당시 오전 <뉴스타임>에서 방영된 뒤에도 항의했지만 KBS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내보냈다.

김 판사는 “KBS가 보도한 내용은 병원에서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목소리 등이 방영되고 피해환자가 특정됨으로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돼 원고 전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김 판사는 올해 환자와 전 씨의 소송사건에서 ‘전

씨가 40%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생상태 때문에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것이라는 KBS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다만 KBS가 보도할 당시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그럼에도 전씨의 얼굴과 상반신마저 그대로 내보낸 것은 이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초상권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KBS는 항소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히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2006년 11월 30일

“포털, 언론처럼 오보 책임 져라”

‘우리는 기사 유통업자일 뿐이다!’, 매일 8,00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뉴스창에 퍼 올리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포털에 실은 기사가 오보, 명예훼손 시비를 일으키면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며 포털에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기사 저작권이 없고, 언론사와 전채 계약을 맺을 때도 관련 규정을 넣지 않았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언론중재위원회 간부가 최근 이런 포털 쪽의 ‘항변’을 법리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포털도 다른 언론처럼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등에 전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23 ~ 25일 전북 대둔산에서 열리는 중재위 정기세미나 발제문 ‘포털뉴스의 피해구제 방안을 둘러싼 쟁점

과 과제’를 통해 이런 견해와 함께 언론중재법의 중재·조정 대상에 포털을 포함시키고,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기사삭제, 게시중지 청구까지 중재위 조정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정정보도는 원 기사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새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언론과의 계약상 정정보도 책임이 없다는 항변도 해당 계약과 무관한 3자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무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운영주체가 전통 언론사와 달라도 다루는 기사가 언론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적시 여부이지 보도의

형태가 아니다”라며 “기사의 최종 매개체가 된 포털에게 정정보도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 청구 절차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기사생산자인 언론사, 매개자인 포털 등을 정정보도 청구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인 박영태 미디어다음 콘텐츠 팀장은 “포털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대안에 공감하지만, 상품 유통적 기능이 강한 포털을 다른 언론과 똑같은 성격으로 책임 부담을 지우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인터넷상에서 정정보도 형식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2006년 11월 23일

임종인 의원 ‘돌발영상’ 소송 패소

국회에서 ‘막말’을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뉴스전문채널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의원이 YTN과 디지털 YTN,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의원은 YTN이 6월 20일 국회에서 자신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향해 막말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튿날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하자 “동의 없이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2천 만 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8월 제기했다.

임 의원은 “YTN은 인터넷 홈페이지 ‘돌발영상’ 코너에 게시한 동영상상 삭제하라”며 영상물계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7월 중순 “언론은 국민의 관심에 부응할 소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6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사적 대화 ‘돌발영상’ 삭제하라”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김경중)는 17일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돌발영상’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와이티엔과 디지털와이티엔(주) 상대로 낸 영상물계재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이 대화가 담긴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돌발영상’ 난에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동영상 가운데 임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의원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모습을 촬영한 것만으로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와이티엔은 올 6월 임 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촬영해 방영하고 인터넷에 올렸다.

한겨레 2006년 11월 18일